

이종엽
건축사사무소 우일
by Lee Jong-Yeop

설계, 감리 기술 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공청회를 듣고

After Attending the Public Hearing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Techniques

건축공사 김리제도에 대한 국회의원 입법제안으로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와 주택도시국은 홍익대학교에 「설계, 감리 기술 진흥 및 육성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 이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2003년 11월 28일 홍익대학교 외우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 앞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짜놓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알고 있지만 이 세미나에서 연구내용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명확하게 개정골자의 핵심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다. 특히 토론자의 반론도 엉뚱하며 업무의 정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발표자의 뜻에 미치지 못하였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의도에 대해 전혀 공부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의 정의내용도 잘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발설하였다.

더욱이 이 토론회의 좌장은 토론자의 잘못된 발언이나 해석을 지적하여 토론의 목적을 유도하지 못하고 시간만 채워 2시간 반에 끝나 버렸다.

특히 이 토론의 성격상 주무를 맡은 건설교통부의 실무자는 청취석에서 팔장만 끼고 관망할 뿐 실제로 당면한 제 문제점의 실상을 감추어 버리고 진지한 토론의 암맹이가 없었다. 이날 청취자에 배부한 자료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하다.

이날 첫 번째의 발표에서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이미 우리협회에서 「건축사 설계업무 기준」 내용의 일부들이다.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완성된 설계도서(실시설계도서)로 공사를 수행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하며, 「설계도서 내용대로 ……」라고 정의에 합당한 설계도서라야 한다. 모든 건축물의 크고 작은 규모의 공사라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구체화, 명확화 하여야 한다.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분쟁과 건축주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도서의 내용이 바로 공사에 이어지도록 충실히 명확하게 하여 완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설계도서의 적법성, 공사의 타당성, 공법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허가권자가 검토)

설계도서 내용대로 …… 공사 감리하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며 완벽할 정도로 구체화한 설계도서를 공사 착수전에 검토, 수정, 보완하여 공사에 임하고 있다.

공사 및 공사감리 그 자체는 설계를 고쳐가면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공사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의 전달, 시공계획서의 제출에 있어서 설계도서를 고쳐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생략)

또한 건축사법의 정의에서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어떤 규정도 없으며, 실제로 설계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사”라 힘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행하는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동일인이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없다. 이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라야 한다고 정의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토론자 A씨는 설계자가 공사감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장 B씨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쳐 버린다. 적어도 토론의 죄장은 토론을 바르게 이끌도록 해야하지만 건축에 대해 건축사법이나 건축의 사상, 조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날의 토론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

이 토론은 “공청회”라고 하지만 공청회에건축사업부 방향에 대해 꼬리를 내리고 일 맹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청회는 처음 본다. 공청회의 뜻은 법령안의 의법예고에 대해 주관기관의 장이 예고한 법령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청문(“공청”이라고 함)을 행하고, 이에 관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게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국가가 공공단체, 기관의 그 권한으로써 일반국민에 큰 영향이 있고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일반국민 또는 학자, 이해당사자와 관련업무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것을 공청회라고 알고 있지만, 이들 토론자들의 자질과 충분한 안건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형식적인 토론에 불과

하다. 특히 이 토론회에 안건을 “공청회”라 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후에 개정안건을 과연 진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예고나 법개정의 문제점의 도출에 즈음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입안자는 본 공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이라고 내세울지 모른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감리의 주대상과 주안점에 있어서 좋은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도서의 전달과 설계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공사 감리의 주목표는 공사가 적법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확보에 있다.

안전과 질적 확보는 공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서의 완성에도 있다. 설계도서를 완성하지 못하는 공사는 나침반이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은 건축물의 규모, 난이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의 기술수준과 공사관리 능력에 따라 감리 내용이 달라진다.

우리들이 수행하는 감리는 시공자의 자주시공 능력을 전제로 하여 감리 방법 범위가 정하여졌으며,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감리업무는 시공자의 일정한 기술수준의 전제하에 감리기준이 정하여졌으나 소규모의 건축물이라 해서 시공자의 자주시공에 맡기고 조언하여 공사결과에 의한 확인만으로 감리업무의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였다 할 수 없다.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공사와 위법시공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설계도서의 완성과 공사감리에서 공정성이 없다면 어떠한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수행을 커버하지 못한다.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일인이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성의 확보와 건축주를 보호해야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적, 현실적으로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설계도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감리를 소홀히 하고 “봐주기식”으로 행하여 시공자의 편의, 편익을 제공하여 설계수주에서 불균형이 생기고 있으며,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가 설 땅은 없어진다. 또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영화와 인력활용

면에서 과연 그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우리들 자신이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수임대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수행하는 업무대가는 과거나 지금에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공사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라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인식에 있었으며, 업무수임에 있어서 거의 감리비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업무수임에서 제 값을 받아야 경영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공사감리에 있어서 공사진행과정의 검사, 검증, 확인이라야 하나 공사결과에 의한 검증, 검사, 확인은 성립되지 않으며 공사결과에 대한 검사가 감리라 할 수 없다. 발표자의 감리 업무개선에 있어서 시공검사는 공사결과에 의한 검사, 확인은 현행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다를 바 없으며 감사적업무로 같은 맥락이다.

발표자는 감리업무 개선방안이 있어서 시공자의 기술수준, 공사관리능력, 시공자의 부실과 공사 질적향상,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대응, 시공자의 편익제공과 설계수주의 불균형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언급은 없다. 발표자는 공사감리를 공사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사가 감리에 대해 발표자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론 자체도 코드가 맞지 않는다.

감리 개선 방향은 우리의 업무이므로 발표자의 의도를 재확인하기 위해 본 협회에서 설명회와 모순점을 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고 이대로 법 개선에 옮겨진다면 감리 업무의 혼란, 변질, 우리의 업무가 부류될 것을 염려한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해 강건너 불보듯 하지 않기를 바란다. ■

* 이 글은 우리협회 홈페이지(회원전용기사판)에서 펴온 것입니다.